

의안번호	제2585호
의 결	2023. . . .
연 월 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허옥희 의원 등 5인
발의연월일	2023. 3. 3.

#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허옥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8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3. 3.

발 의 자 : 허옥희, 정영환, 이쌍자  
김향숙, 최두임 의원  
(5인)

## 1. 제안이유

현행 조례에서 자문자(군수)와 자문에 응하는 자(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)가 동일한 문제를 개선하고, 정책 자문에 있어서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 있어 이를 신설하며, 명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명확화 및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(안 제2조, 제3조)
- 나. 명확한 내용 전달을 위한 용어 및 표현 정비(안 제5조, 제10조)
- 다. 군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1조의2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-6호

- 예고기간: 2023. 3. 3.(금) ~ 2023. 3. 10.(금) [7일간]
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군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에 따라 고성군”을 “고성군”으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기능)”을 “(설치 및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위원회”로, “조언·권고·건의·제안 등을 할 수 있다”를 “군수의 자문에 응한다”로 한다.

- ① 고성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의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책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다만, 부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분과별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위원의 제척)”을 “(위원의 자문 배제)”로 하고, 같은 조

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제척은”을 “위원의 자문 배제는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기획예산담당관”을 “고성군 정책기획 담당부서의 장”으로,  
“기획담당”을 “그 부서의 담당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의견 청취) ①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 
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 
토론회, 세미나,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 
을 청취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토론회, 세미나, 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 
위원회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 
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군정의 주</u> <u>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대하</u> <u>여 자문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</u> <u>제130조에 따라 고성군 정책자</u> <u>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</u> <u>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</u> <u>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기능) &lt;신 설&gt;</p> <p><u>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(이하 “위</u> <u>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</u> <u>사항에 관하여 <u>조언·권고·건</u></u> <u>의·제안 등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제3조(구성) ① <u>위원회는 위원장</u> <u>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</u> <u>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특성 성</u> <u>의 위원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</u> <u>의 6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고성군</u>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설치 및 기능) ① <u>고성군의</u> <u>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고성</u> <u>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의 자</u> <u>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</u> <u>책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</u> <u>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군수</u> <u>의 자문에 응한다.</u>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구성) ① <u>위원회는 30명 이</u> <u>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

다.

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, 부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분과별 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(생략)

제5조(위원의 제척)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 응할 수 없다. 이 경우 제척은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.

1. 2. (생략)

제10조(간사 및 서기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, 서기는 기획담당으로 한다.

<신설>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다만, 부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분과별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위원의 자문 배제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. ----- 위원의 자문 배제  
는 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간사 및 서기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고성군 정책기획  
담당부서의 장-- 그 부서의 담  
당-----  
-----.

제11조의2(의견 청취) ①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토론회, 세미

나,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군민  
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 
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 
토론회, 세미나, 공청회 등에 대  
하여는 위원회 활동을 포함한  
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 
지원할 수 있다.



**□ 지방자치법**

- 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